濟州島硏究 제44집
2015. 8. pp. 29~64.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한금순*

국문요약

최정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서의 3·1운동에 참여한 제주도 인물이다. 당시 학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로는 「신문조서」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청구의견」, 「의견서」, 「예심종결결정서」, 「공판시말서」, 「판결문」, 「수형인명부」, 「상소포기신청서」 등 9종 16개의 문서가 있다. 이들 문서는 최정숙을 통해 학생들의 시대 인식과 일제의 3·1운동 재판 과정 등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이들 문서를 살펴보니 최정숙은 18세의 학생으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무로에 있던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기숙사에서 종로, 무교동을 거쳐 대한문까지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와 창덕궁 앞과 경복궁 앞, 광화문에서 서대문, 서소문, 소공동을 지나 충무로 쪽으로 갔다.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충무로 일대에서 만세를 부르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체포되었다. 3월 1일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10월 29일 공판이 있었고 11월 6일 판결을 받았다. 죄명은 보안법 위반, 형량은 징역 6월에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모두 계산하고 3년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정숙은 일제강점기 내내 교육 활동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국권회복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으

* 문학박사

로 여성의 교육 활동과 사회활동을 위한 계몽활동에 힘을 쏟았다. 본고의 분석은 차후 최정숙의 3·1운동 이후 활동의 사상적 배경이라든지 활동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3·1운동,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여수원, 신성여학교

I. 머리말

최정숙(崔貞淑)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서의 3·1운동에 참여한 제주도 인물이다. 본고는 최정숙 관련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독립운동가의 개별 연구는 미흡하다. 최정숙의 경우도 3·1운동에 참여한 재판 관련 문서가 다수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학술적 연구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최정숙 관련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3·1운동 참여자들의 재판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제시하여 차후 강평국(姜平國), 고수선(高守善), 박규훈(朴圭壎) 등의 제주도 3·1운동 참여자들의 연구에도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정숙 관련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로는 「신문조서」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청구의견」, 「의견서」, 「예심종결결정서」, 「공판시말서」, 「판결문」, 「수형인명부」, 「상소포기신청서」 등 9종 16개의 문서가 있다. 이들 문서 속의 최정숙을 통해 일제의 3·1운동 재판 처리 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독립

운동가로서의 최정숙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숙은 일제강점기 내내 교육 활동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국권회복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으로 여성의 교육 활동과 사회 활동을 위한 계몽 활동에 힘을 쏟았다. 본고는 차후 최정숙의 3·1운동 이후 활동의 사상적 배경이라든지 활동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정숙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생애가 우선 조명되어야 한다. 그의 활동은 3·1운동에 참여하던 학생 시절의 인식이 청년기 이후 활동의 주요 노선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를 통해 독립운동가로서의 최정숙에 대해 먼저 살피고, 이를 활용하여 그의 교육 활동과 여성 활동에 관련한 생애를 추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최정숙의 생애

최정숙[1]은 1902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1909년 설립된 신성여학교에 입학하였다. 신성여학교는 4년의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1년의 체제로 운영하였는데 1914년 다섯 명이 졸업하였다.[2] 다섯 명의 졸업생 중에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등이 있는데 이들 셋은 서울에서도 같은 학교에 다녔고 3·1운동에도 함께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까지도 같이 활동한다.

최정숙은 1915년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8년 졸업하였고 다시 1919년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3] 사범과에 입

1) 최정숙(崔貞淑: 1902. 2. 10~1977. 2. 22).
2)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 설립운동」『탐라문화』24,(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4), 40~41쪽.

학하였다.[4] 3월 1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되었으며 1919년 11월 6일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최정숙은 제주도로 내려온다. 1920년 여수원이라는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 활동에 힘쓰기 시작한다. 명신학교로 통합하고 나서는 명신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25년에는 목포의 소화학교, 1931년 전주의 해성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았다.

또한 사회단체를 결성하여 여성들의 계몽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제주여자장학회를 조직하여 여수원을 설립하였고,[5] 제주흥학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6] 1925년에는 강평국, 고수선 등과 함께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여성들의 계몽활동을 주요 관심사로 한 활동을 지속한다.[7]

1939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고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위생감을 지내었으며 1944년 제주도로 귀향하여 정화의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8] 해방 이후에는 신성여자중학교를 인가 받고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제주도교육감을 역임하는 등으로 교육자로서의 삶을 지속하였다. 또한 고수선과 함께 대한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계몽 활동이라는 사안을 놓지 않았다. 사후 독립운동 공훈을 기리어 1993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다.

최정숙의 생애를 살펴보면 3·1운동에 참여하던 기개와 사상의 지속적 실천으로 생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최정

3) 경기여자고등학교 전신.
4)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5) 「제주의 여자 교육열」『동아일보』(1921. 3. 25.).
6) 「제주 남녀 연합 강연」『동아일보』(1921. 8. 29.).
7) 「제주여청」『동아일보』(1927. 5. 18.).
8) 김찬흡, 『20세기제주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0) 참조,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http://jeju.grandculture.net).

숙의 독립운동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생애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Ⅲ.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1. 재판 관련 문서의 종류와 성격

최정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당일 본정(本町)경찰서[9]에 체포되어 11월 6일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이 과정의 재판 관련 문서로 「신문조서」류 6개의 문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2개의 문서, 「청구의견」, 「의견서」, 「예심종결결정서」, 「공판시말서」 2개의 문서, 「판결문」, 「수형인명부」, 「상소포기신청서」 등 9종 16개의 문서가 있다.[10] 문서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문조서」류는 체포된 뒤 신문 받은 기록으로 경성지방법원 문서이다. 최정숙을 신문한 「최정숙 신문조서」[11]가 3개 있고 같은 학교 동료인 「최은희 신문조서」,[12] 「이명숙 신문조서」,[13] 「노순열 신문조서」[14] 등에 최정숙이 언

9)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

10) 법률 용어와 재판 기록의 분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문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11)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경성지방법원, 4. 18,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 15, 17(1994) 수록.

12) 「최은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13) 「이명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1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14) 「노순열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10.), 국사편찬위원회, 『한

급되어 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15]는 학생들의 동정과 품행을 조회한 문서이다. 종로경찰서장이 1919년 3월 2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내었다. 최정숙 외 6명의 동정을 조사하여 경무부에 보고했고 이를 모아서 경성지방법원으로 보고한 문서이다. 최정숙에 대한 단독 보고서가 있고 최은희 보고서에서도 최정숙을 언급하고 있다.

「청구의견」[16]은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가 예심으로 더 이상 취조할 것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의견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8월 29일자 문서이다.

표 1 최정숙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목록

번호	문서 종류	문서	문서 생산
1	신문조서	최정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5.)
2		최정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1919. 4. 18.)
3		최정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1919. 6. 26.)
4		최은희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7.)
5		이명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10.)
6		노순열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10.)
7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최정숙 보고서	경성 종로경찰서장(1919. 3. 27.)

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15)「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 및 성행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1994) 수록.

16) 「청구의견」(경성지방법원, 1919. 8.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6(1994) 수록.

8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최은희 보고서	경성 종로경찰서장(1919. 3. 27.)
9	청구의견		경성지방법원(1919. 8. 29.)
10	의견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8. 30.)
11	예심종결결정서		경성지방법원(1919. 8. 30.)
12	공판시말서	공판시말서	경성지방법원(1919. 10. 29.)
13		공판시말서	경성지방법원(1919. 11. 6.)
14	판결문		경성지방법원(1919. 11. 6.)
15	수형인명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11. 6.)
16	상소포기신청서		서대문형무소(1919. 11. 7.)

「의견서」[17]는 앞의 「청구의견」에 대한 답장의 형태로, 신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 예심한 결과를 받아보고 공판에 부치라는 의견을 경성지방법원으로 보낸 8월 30일자 문서이다.

「예심종결결정서」[18]는 8월 30일자 문서로 예심[19]을 마치고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는 문서이다.

「공판시말서」[20]는 공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10월 29일과 11월 6일 공판이 있었다. 경성지방법원 공개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등원하고 피고인들이 출정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확인 받고 판결을 언도하는 등의 재판 진행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

17) 「의견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8. 3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18)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19) 예심이란 구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공판 전의 절차를 말한다.

20)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11. 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판결문」[21]은 재판에서 판결 받은 사항이 기록된 문서이다.

「수형인명부」[22]는 수형 상태를 기록한 문서이다.

「상소포기신청서」[23]는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문서로 서대문감옥에서 11월 7일 생산되었다.

2.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1) 「신문조서」류

「신문조서」류에는 3개의 「최정숙 신문조서」와 최정숙을 언급한 최정숙의 학교 동료들의 「신문조서」 3개의 문서가 있다.

표 2 신문조서류 목록

번호	문서 종류	문서	문서 생산
1	신문조서	최정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5.)
2		최정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1919. 4. 18.)
3		최정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1919. 6. 26.)
4		최은희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7.)
5		노순열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10.)
6		이명숙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10.)

(1)「최정숙 신문조서」

가)「최정숙 신문조서」 제1

우선 1919년 3월 5일의 「최정숙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옥명우언

21)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11. 6.), 국가기록원 소장.
22) 「수형인명부」(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11. 6.), 국가기록원 소장.
23) 「상소포기신청서」(경성지방법원, 1919. 11.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玉名友彦)이 신문하였고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가 참여하였다. 조서는 경무총감부에서 작성하였다. 성명·연령·신분·직업·주소·본적지 및 출생지 등을 확인 한 후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신문하였다. 최정숙은 18세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고,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최정숙 신문조서
최정숙
위 피고인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정(大正) 8년 3월 5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 옥명우언(玉名友彦)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길전준(吉田畯)
열석한 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다.
문 : 성명·연령·신분·직업·주소·본적지 및 출생지는 어떠한가.
답 : 성명·연령은 최정숙, 18세. 신분·직업은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주소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기숙사 내.[24]

조선총독부 검사가 최정숙을 상대로 실시한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정숙은 3월 1일 다리가 아파 기숙사에서 쉬고 있다가 오후 3시에 군중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 : 그날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답 : 그날은 다리가 아파 오후 3시경까지는 쉬고 있었다.[25]

기숙사 근처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

24)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25)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고 최정숙은 밖으로 나가 가담하였다.

문 : 그날 오후 3시에 그대가 있는 기숙사로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들어온 일이 있는가.

답 : 기숙사로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 근처에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소요하고 있는 것을 기숙사 창밖으로 보았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 그 군중 속에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종로 거리에서 군중을 따라 대한문까지 갔었고, 다시 종로 거리로 되돌아와서 창덕궁으로 갔다가 광화문 쪽으로 가서 다시 서대문 쪽으로 갔으며, 경성우편국 쪽으로 가서 본정통(本町通)으로 나왔다가 마침내 우리들은 체포되었던 것이다.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군중 속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군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모두가 「만세 만세」라고 외치라고 하기에 나도 만세를 연달아 불렀다. 위의 군중들은 모두가 경성 안에 있는 학생들뿐인 것 같았다.[26]

최정숙은 조선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소요하고 있음을 보고 기숙사를 나가 군중에 가담하였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충무로의 기숙사에서 종로로 대한문까지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와 창덕궁으로 다시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갔다 경성우편국[27]에서 본정통[28]까지 다니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문 : 그대는 그 학생들이 독립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어찌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답 : 조선이 독립할 수 있게 되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동포로서 기쁘게 생각하여 군중 속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나는 장래 조선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가보다 하고 만세를 연달아 불렀다.[29]

---

26)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27) 현재 서울 중앙우체국. 충무로에 있다.
28) 현재 충무로 일대.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은 조선이 독립할 수 있게 되어서라 생각하며 최정숙 자신도 조선 동포로서 조선독립이 이루어지는가 보다하고 독립을 기쁘게 생각하여 만세를 불렀다고 신문에 대답하였다.

나)「최정숙 신문조서」 제2

4월 18일의 「최정숙 신문조서」를 보면 이날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부 예심계 판사 굴직희(堀直喜)에게 신문을 받는다.

> 최정숙 신문조서
> 피고인 최정숙
> 위 피고인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정 8년 4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 예심계 직무대리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
>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도부직태랑(渡部直太郎)
>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생략…
> 문 : 3월 1일에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서울 시내를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닌 일이 있는가.
> 답 : 군중에 끼어서 종로, 대한문, 광화문, 서대문, 본정통을 순차로 돌아다니면서 도중에 만세를 불렀다.
> 위 읽어서 들려주었더니 틀림이 없다고 진술하고 서명하다.[30]

조선총독부 판사는 최정숙에게 3월 1일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종로, 대한문, 광화문, 서대문, 본정통을 다녔다는 처음의 신문조서를 읽어주고 틀림없는지를 서명 받았다.

다)「최정숙 신문조서」 제3

---

29)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30)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4. 1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5(1994) 수록.

다음으로 6월 26일 「최정숙 신문조서」는 신문조서 제2회로 기록되어 있다. 3개의 신문조서 중에 활동 사항이 가장 자세하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신문자는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이다.

최정숙 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최정숙
위 사람에 대한 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6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계 직무대리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31]

최정숙의 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피고는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무슨 과에 다니는가.
답 : 사범과를 금년 3월에 졸업했다.
문 :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학교에 다녔는가.
답 : 서울의 진명여학교를 졸업했다.[32]

최정숙은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1919년 3월에 졸업하였다.

문 : 피고는 기숙사에 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몇 사람이나 기숙하고 있었는가.
답 : 70명쯤 있었다.
문 : 최은희(崔恩喜)를 아는가.

31)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32)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답 : 알고 있다.

문 : 강평국·유재룡·이명숙·고수선·김일조 등을 아는가.

답 : 이명숙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은 모두 같은 학급 사람이므로 알고 있다. 이명숙은 모른다.[33]

기숙사에는 70명쯤이 기숙하고 있었고 최은희, 강평국, 유재룡, 고수선, 김일조 등과 같은 학급이었다.

문 : 3월 1일에는 고등보통학교 부속 재동여자보통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었는가.

답 : 그렇다.

문 : 피고는 2월 28일부터 발이 아프다고 하면서 누워 있었는가.

답 : 그날 이(李)태왕 전하의 국장예습을 하고 있을 때부터 각기병에 걸려 발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34]

최정숙은 3월 1일은 고등보통학교의 부속 재동여자보통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2월 28일부터 각기병에 걸려 발이 아파 누워있었다.

문 : 피고는 발이 아파 교생실습도 하지 않고, 3월 1일에는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다면서 왜 독립운동에 참가했는가.

답 : 3월 1일에는 발도 아프고 몸도 좀 아파서 오전 중 누워 있었다.

문 : 2월 28일에는 등교했는가.

답 : 그날은 등교했다.

문 : 발이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시내를 걸어서 돌아다녔는가.

답 : 그때는 너무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아픈 줄도 모르고 시내를

33)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34)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돌아다녔던 것이다.[35]

오전 중에는 발이 아파서 누워있었으나 너무 열광해서 발이 아픈 줄도 모르고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다.

문 : 왜 군중에 들어가서 만세를 부르고 다녔는지 그 전말을 진술하라.

답 : 나는 3월 1일에는 발이 아파서 기숙사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이 모두 뛰쳐나갔다. 나도 종로까지 갔더니 무교정(武橋町)을 거쳐서 대한문 쪽으로 군중이 만세를 부르면서 가고 있었으므로, 그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문 앞·창덕궁 앞·경복궁 앞·서대문정·서소문정·장곡천정(長谷川町) 방면을 거쳐 본정으로 들어가다가 체포되었다.[36]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돌아다닌 상황을 진술하였다. 기숙사가 있는 충무로에서 종로, 무교정을 거쳐 대한문 앞, 창덕궁 앞과 경복궁 앞, 서대문정과 서소문정, 장곡천정,[37]을 거쳐 기숙사가 있는 본정[38]으로 가다가 체포되었다.

문 : 왜 독립만세를 부르고 다녔는가.

답 : 독립운동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찬성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다녔던 것이다.

문 : 독립운동에 왜 찬성했는가.

답 : 누구라도 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싫은 것으로 누구나 자유를 바라고 있으므로,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서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39]

---

35)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36)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37) 현재 소공동.

38) 현재 충무로.

39)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

독립만세를 부른 이유는 그것이 독립운동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조선도 자유의 나라가 되고 싶어 독립을 원하는 것이라고 최정숙은 대답했다.

문 : 군중은 몇 사람쯤이나 있었는가.

답 : 너무 많은 군중이었으므로 그 수효는 알 수 없다.

문 : 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는가.

답 : 그 이전에 학교에서 선생에게 일본에서 조선유학생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주의를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군중이 독립만세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독립운동이란 것을 알았다.

문 : 그런 것이 아니고, 최은희·강평국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운동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듣고 학교에서 상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이 없다. 3월 1일에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문 : 순사 구송번(久松繁)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학교 선생은 그 이전부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데 어떤가.

답 : 나는 독립운동에 대해 들은 일 없다.[40]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신문에 조선유학생이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알았노라 대답했다. 독립만세를 최은희, 강평국 등과 미리 같이 모의한 게 아닌가를 물었으나 3월 1일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예심계 판사가 질문하는 순사 구송번(久松繁)의 보고서는 바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조회」[41]를 말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바로 다음 항목 2)에서 살펴

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40)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41)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 및 성행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1994) 수록.

볼 것이다.

최정숙은 독립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신문에 대해 한일합병에 의해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문 : 남의 압박을 받고 있기 보다는 독립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외에 또 무슨 이유가 있는가.
> 답 : 정치상의 일은 모르나 일한합병에 의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나도 조선인인 이상 이번과 같은 독립운동이 있으면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42]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냐는 신문에 대해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있으므로 조선인이 독립하고자하여 궐기하면 강화회의에서도 알게 되고 일본정부도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문 : 그와 같이 만세를 부르고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독립이 되는가.
> 답 : 강화회의에서는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있다. 그래서 민족이 달라 동화될 수 없는 조선인이 독립을 하고자 궐기하면 자연히 강화회의에서도 알게 될 것이고, 일본정부도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43]

사범과를 졸업하여 독신생활을 하면서 교육에 종사할 생각을 갖고 있노라고 피력하였다.

---

42)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43)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문 : 피고는 교육자가 될 작정으로 사범과를 졸업했을 것이나 장래 가정주부가 되려는 생각이 있었는가.

답 : 내 생각으로는 장래 독신생활을 하면서 교육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문 : 3월 1일 기숙사를 나올 때에는 모두가 함께 나왔는가.

답 : 함께 나왔다.

문 : 그때 최은희·강평국 등도 같이 나왔는가.

답 : 기숙사생이 같이 나왔지만 누구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문 : 피고 등이 기숙사생을 인솔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아닌가.

답 : 그렇지 않다.[44]

이상 3개의 「최정숙 신문조서」를 통해 살핀 바와 같이, 최정숙은 독립만세를 부르는 행위가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였고 만세운동이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 조선의 독립을 이루는 궐기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였다. 기숙사가 있는 충무로에서 종로로 무교동을 거쳐 대한문까지 갔다가 창덕궁 앞과 경복궁 앞을 지나 서대문, 서소문, 소공동을 지나 충무로까지 만세를 부르며 다니다 체포되었다. 같은 학급의 최은희, 강평국, 고수선이 함께 하였다.

(2) 학교동료 「신문조서」

최정숙과 같은 학교 동료들에 대한 「신문조서」에도 최정숙에 관한 신문 내용이 있다.

가)「최은희 신문조서」

최은희는 1919년 3월 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최정숙과 같은 검사에게 신문을 받는다.

최은희 신문조서

44) 「최정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6. 2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최은희

위 피고인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정 8년 3월 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 옥명우언(玉名友彦)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길전준(吉田畯)

열석한 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다.

문 : 성명·연령·신분·직업·주소·본적지 및 출생지는 어떠한가.

답 : 성명·연령은 최은희, 17세, 11월 21일생.

신분·직업은 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생.

주소는 경성부 교동 기숙사.[45]

최정숙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으며 기숙사는 교동[46]의 기숙사에 있었다. 3월 1일 기숙사 근처에서 만세소리를 듣고 기숙사를 나와 종로까지 나가 조선이 독립할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쁘게 같이 만세를 불렀다.

문 : 3월 1일에는 등교하였는가.

답 : 오후 2시까지였으나, 조금 일찍 끝났다.

문 : 그날 오후에 기숙사를 나와 시내로 나왔었다는데, 무슨 용무가 있었는가.

답 : 기숙사 근처에서 만세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동료들 20명 정도가 문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그 소리를 따라서 종로까지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만세」 하고 외치고 있었으므로 나는 장래 조선이 독립할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문 : 그 종로통에는 몇 사람 정도의 군중이 있었는가.

답 : 수천 명 정도 있었다.

문 : 그 후 군중 속에 뛰어들어 후열에 열을 지어서 창덕궁·안국동·광화문·서대문 근처까지 만세를 부르면서 걸어 다녔는가.

답 : 그렇다. 그리고나서 대한문으로 갔다가 본정통으로 갔다.[47]

---

45) 「최은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46) 현재 서울 종로구 경운동.

만세를 부르며 종로에서 창덕궁, 안국동, 광화문, 서대문 그리고 대한문으로 갔다가 본정통까지 갔다.

문 : 최정숙을 아는가.
답 : 알고 있다.[48]

최정숙과는 아는 사이라고 대답하였다.

나)「이명숙 신문조서」

이명숙은 1919년 3월 10일 종로경찰서에서 조선총독부 검사에게 신문을 받았다. 이명숙은 최정숙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이명숙 신문조서
이명숙
위 피고인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정 8년 3월 10일 경성 종로경찰서에서 …생략…
답 : 성명·연령은 이명숙, 18세.
신분·직업은 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 2학년.
주소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기숙사. …생략…
문 : 최정숙을 아는가.
답 : 알고 있다.
문 : 3월 5일에 그대는 남대문통으로 가서 만세를 부른 일이 있는가.
답 : 그때는 종로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것은 약 오전 9시 반경이었다. 그때는 물건을 사려고 나갔을 때 군중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으므로 나도 2·3차 만세를 불렀다.[49]

47) 「최은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48) 「최은희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3.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49) 「이명숙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3. 1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이명숙은 3월 5일 오전 9시 반경에 종로에서 2, 3차 만세를 불렀다. 다)「노순열 신문조서」

노순열도 이명숙과 함께 3월 10일 종로경찰서에서 조선총독부 검사에게 신문을 받았다. 최정숙과 같은 학교 동료이며 같은 기숙사 동료이기도 하다.

노순열 신문조서
노순열
위 피고인에 대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정 8년 3월 10
경성 종로경찰서에서 …생략…
답 : 성명・연령은 노순열, 19세.
신분・직업은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주소는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숙사.
문 : 최정숙・최은희를 아는가.
답 : 알고 있다.
문 : 3월 1일에는 위 두 사람과 그 밖의 사람들도 갔었다는데, 어떠한가.
답 :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는 말을 선생으로부터 들었다.[50]

최정숙과 최은희는 3월 1일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는 말을 선생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는 시위관련 학생들의 동정과 품행을 경찰서 순사가 학교의 협조로 조사하고 이를 종로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낸 문서이다. 일본

50) 「노순열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1919. 3. 1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4(1994) 수록.

경찰은 총독부 검사들이 시위 관련자 신문을 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동정과 품행을 조회하여 보고하였다.

모두 6명에 대한 경찰의 보고서가 있다. 최정숙과 최은희 외에는 세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금자 (본과 2년) …생략… 유경숙 (본과 2년) …생략… 이순이 (기예과 3년) …생략… 김애순 (기예과 2년) …생략… 이상 4명은 모두 학생 사이에서 신용 또는 세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번 소요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선동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51]

(1)최정숙 보고서

창덕궁경찰서의 순사 구송번(久松繁)이 동정을 보고하였다.

> 보고서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생
> 최정숙 18세
> 위 사람은 이달 1일 학생 소요사건에 관하여 본정경찰서에 검거되어 현재 경성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바 그 소요 전에 그 사람의 그 학교에서의 동정을 참고로 보고합니다.
> 一. 본인은 학업성적이 좋으므로 교내 및 기숙사에서도 세력을 얻어 그 학교 생도의 지도권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 소요사건에 관해서 그 학교 직원은 말하기를 본인은 이미 지난 달 27·8일경부터 그 학교 기숙사생 최은희, 강평국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계획을 학생 사이에서 밀의한 흔적이 뚜렷하고 소요 당일, 즉 3월 1일에는 본인은 그 학교 부속 재동여자보통학교에 교수실습을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2월 28일부터 발이 아프다고 하면서 기숙사에 누워 있으면서 3월 1일 오후 2시경이 되자 솔선하여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동숙생을 이끌고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일동과 함

51)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 및 성행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1994) 수록.

께 여러 곳을 누비고 다니다가 마침내 본정통에서 잡힌 자로서 본인이 28일 및 1일 오전 중에 발이 아프다고 하면서 누워 있었던 것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그 학교의 직원과 학생은 말하고 있다.[52]

최정숙의 학교에서의 생활은 학업 성적이 좋아 교내와 기숙사에서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 직원이 말하길 같은 기숙사생 최은희, 강평국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계획을 학생 사이에서 몰래 의논하였고, 2월 28일부터 발이 아프다며 교수실습을 가지 않고 기숙사에 누워 있던 것은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던 모습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3월 1일 기숙사 친구들을 이끌고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갔다. 여러 곳을 다니다가 본정통에서 잡혔다는 내용이다.

(2)최은희 보고서

같은 학교 최은희에 대한 보고서에도 최정숙에 대한 보고가 있다.

보고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 3년생
최은희 17세
이번 소요에 관해서 본인은 이미 남학생 측에게서 2월 26·7일경에 독립운동소요의 상의를 받은 모양이며 그 27일인지 28일경에는 동숙생 최정숙, 강평국, 유재룡, 이명숙, 고수선, 김일조 등과 상의하고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형적이 충분하여 그 학교에서 수령급은 본인 및 최정숙, 강평국이 수령급의 주된 자라고 그 학교 내의 학생 및 직원은 말했다.[53]

52)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 및 성행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1994) 수록.
53)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 및 성행조회」(경성종로경찰서장, 1919. 3. 2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1994) 수록.

최은희 보고서에는 최은희를 비롯한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등을 3·1운동에 참여한 수령급으로 파악하고 있다.

3)「청구의견」

「청구의견」은 3·1운동 참여자들을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예심을 마쳤다는 1919년 8월 29일 문서이다.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예심을 마치고 더 이상 취조가 필요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해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는 문서이다.

…생략… 최정숙 …생략…

위 자에 대한 출판법과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예심을 마친 바 달리 취조를 요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어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해 의견을 구하고자 일건 기록을 송치하나이다.

작성일 대정 8년 8월 29일
발송자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
수신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 경장삼랑(境長三郎) 귀하[54]

4)「의견서」

「의견서」는 앞의 「청구의견」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공판에 부칠 건이라고 의견을 낸 1919년 8월 30일자 문서이다.

54) 「청구의견」(경성지방법원, 1919. 8.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16(1994) 수록.

…생략… 최정숙 …생략…

위 자에 대한 출판법과 보안법위반 사건은 다음 이유에 의해 당원 공판에 부칠 건이라고 사료하여, 이에 의견을 부쳐 별책 소송기록과 함께 반려하나이다.

작성일 대정 8년 8월 30일
발송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山澤佐一郞)
수신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 귀하[55]

「청구의견」을 8월 29일에 냈는데 「의견서」는 8월 30일에 나온다. 공판에 부칠 262명의 보안법 등 피고사건[56]의 「청구의견」 문서를 하루 사이에 훑어보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요식적으로 행한 절차였던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예심종결결정서」

최정숙의 「예심종결결정서」는 「청구의견」과 「의견서」의 절차를 마치고 예심을 종결한다는 문서이다. 예심을 종결하고 공판에 부칠 것을 결정한 문서로 1919년 8월 30일의 결정이다. 8월 30일의 「의견서」를 받고 당일 즉시 예심 종결을 결정한 문서이다.

예심종결결정

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예심을 마치고 종결결정을 함이 다음과 같다

55) 「의견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8. 30.),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7(1994) 수록.
56)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주문
위 피고 등에 대한 본 안 피고사건을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친다.[57]

최정숙 등의 피고인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공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였다. 최정숙을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으로 넘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유
…생략… 최정숙(여) …생략… 등은 위의 목적 하에 파고다공원 또는 동 공원에서 출동한 그 군중에 참가하여 함께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또는 독립만세를 절규하여 군중과 제창하고[58]

최정숙이 3·1운동에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군중들과 함께 제창한 것을 죄명으로 적시하고 있다.

조선독립에 관하여 불온 언동을 한 점은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며 또 형법 제47조 제55조 제54조 및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형법 제6조 제10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범죄로 생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정 8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59]

조선 독립을 위해 불온 언동을 한 행위는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였고 형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로 공판에 회부한다는 내용이다.

6)「공판시말서」

57)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58)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59)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공판시말서」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적은 문서이다. 1919년 10월 29일과 11월 6일의 기록 두개가 있다. 10월 29일 기록으로 문서형식을 살펴보면서 최정숙에 관한 기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다. 제일 먼저 공판에 회부되는 사람들의 성명이 쭉 적혀있다.

공판시말서
오세창 김재중 …생략‥[60]

그 다음으로는 판사를 비롯한 재판 요원들을 밝히고 있다.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동원
조선총독부 판사 전중방춘(田中芳春)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원부홍일(園部弘一)
열석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山澤佐一郞) 입회.
각 피고인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고 출정하다.
변호인 송본정관(松本正寬), 절산독태랑(切山篤太郞), 김기현, 홍유절, 고교장지(高橋章之) 출정하다.
변호인 삼포현삼(三浦顯三)은 불출정하다.[61]

이어서 판사는 피고 한 명 한 명에게 성명, 연령, 직업, 본적, 출생지, 주소를 묻고 답을 받는다. 오세창부터 시작되는데 최정숙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판사는 피고에 대하여 …생략‥

60)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61)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본적, 출생지 전라남도 제주군 제주면 삼도리 1409번지.
주소 경성부 본정 2정목 27번지. 수녀원 기숙사
무직
최정숙 2월 10일생, 18세[62]

이렇게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 262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분리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 이어서 판사는 재판 공개를 정지시킨다.

판사는 김익선 외 262명의 보안법 등 피고사건 중 이상 피고 35명에 대하여 분리하여 심리하는 결정을 언도하다.
검사는 예심종결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다.
판사는 본 건은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공개를 정지하는 결정을 언도하다.[63]

판사는 본 재판 건이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공개된다는 것을 꺼려했던 일제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공개를 정지 시키고 나서 한 사람씩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항을 질문한다. 최정숙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 최정숙에게
문 : 금년 3월 1일 종로에서 독립시위운동을 하는 군중과 마주쳤다는데 어떤가.
답 : 파고다공원 앞에서 군중과 만나 그것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고, 광화문, 서소문정, 본정에까지 갔었다.

---

62)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63)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문 : 독립을 바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가.
답 : 틀림없다.
문 : 여자이기도 하니 장래에는 그런 운동에 참가하지 않겠는가.
답 : 지금 생각으로는 참가하지 않겠다.64)

최정숙은 파고다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며 광화문, 서소문정, 본정까지 다녔고 목적은 독립을 바라는 것이었다고 대답하였다. 판사는 장래에 독립운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확인 받기까지 한다.
개인별로 질문과 대답이 다 끝나고 나서 판사는 증거 물건을 보여준다. 그리고 판사는 공개 정지를 푸는 것을 언도한다.

여기에서 증 제115호, 검증 제112호, 제117호를 보이고, 제2사실의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한 것에 틀림없느냐고 물었던 바 틀림없다고 진술하다.

여기에서 사법경찰관, 검사, 예심판사의 각 피고인 조서를 읽어서 들려주고 각 증거 물건을 보이다. …생략… 판사는 결심할 것을 말하고 공개 정지를 푸는 결정을 언도한다.65)

검사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할 것을 말하고, 변호인은 몇 명을 위해 변론을 한 후 공판을 마친다.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논하고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한다고 하고 각 피고를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생략… 절산(切山) 변호인은 …생략… 변론을 하고 집행유예해 줄 것을 희망하다. …생략…

작성일 대정 8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66)

---

64)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65)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66)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0. 2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

11월 6일의 「공판시말서」는 간략하다.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재판 인원이 명기되어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10월 29일과 동일하다.

> 보안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11월 6일 오전 9시 경성지방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생략… 판사는 판결을 언도할 것을 말하고 판결주문의 낭독에 의하여 판결은 언도하고 구두로 이유의 요령을 말하고 또 이 판결에 대하여 5일 내에 공소할 수 있다는 것 및 자비로 판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다.
>
> 위 언도는 조선총독부 재판소 통역생 마장일랑(馬場一郞)이 통역하다.
>
> 작성일 대정 8년 11월 6일
> 경성지방법원에서[67]

판사의 판결 주문 낭독으로 판결을 언도하였다. 그리고 5일 내로 공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판결서의 정본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공판을 마친다.

「공판시말서」를 통해 공판에 있어서 3·1운동 참여자들의 행적을 확인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최정숙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다음엔 다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대답하게 하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7)「판결문」

최정숙의 판결은 경성지방법원에서 1919년 11월 6일에 대석(對

사자료집』18(1994) 수록.

67) 「공판시말서」(경성지방법원, 1919. 11. 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席), 즉 공판에 출석하여 이루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문(主文)
각 피고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미결구류일수 9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고 또 각 피고에 대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건 중 증 제115호의 깃발 한 폭, 증 제112호 및 증 제117호의 각 붉은 천은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 물건은 각 제출인에게 돌려준다.[68]

최정숙은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미결구류일수 90일, 즉 재판 전에 90일 동안 구류되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미결구류일수를 산입하고 3년간 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음은 「판결문」의 판결 이유이다.

이유
제1. 피고 오세창, …생략… 최정숙 …생략… 은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 선언을 발표한다는 것을 들어 알고 그 취지를 찬성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계획하여 대정 8년 3월 1일 오후 2시경 경성부 파고다 공원에서 위의 독립 선언을 발표하여 수천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파고다 공원에서부터 경성 시내를 행진하는 무리와 만나자 각 피고는 이에 참가하여 그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며 경성 시내를 미친듯이 달리면서 치안을 방해하였다. …생략…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69]

최정숙 등은 독립선언 취지를 찬성하여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려고 계획하였고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며 경성시내를 내달린 것은 치안을 방해 한 죄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68)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69)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8)「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1919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최정숙의 죄명은 보안법 위반이다.

최정숙 십팔세
족칭 상민(常民)
직업 학생
죄명 보안법 위반
형기 징역 육월 미결구류일수 구십일 통산(通算)
초범 대석(對席)
판결 대정 팔년 십일월 육일
확정 대정 팔년 십일월 십일일
판결청 경성지방법원
비고 단 삼년간 형 집행유예[70]

「수형인명부」의 기록은 18세의 학생 최정숙이 경성지방법원에 대석하여 1919년 11월 6일 판결을 받았고 판결 확정은 11월 11일임을 기록하고 있다.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모두 계산하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9)「상소포기신청서」

「상소포기신청서」는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날 1919년 11월 7일 상소를 포기하고 복죄하겠다고 신청한 문서이다. 서대문감옥에서 생산되었다.

---

70) 「수형인명부」(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년), 국가기록원 소장.

상소포기 신청서
서대문감옥
…생략…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각각 위와 같은 언도를 받고 상소 기간 중에 있는 바, 그 상소권을 포기하고 복죄하겠기로 이에 신청합니다.
작성일 대정 8년 11월 7일
발송자 위 각 피고인
수신자 경성지방법원장
조선총독부 판사 칙사 하원건지조(河原健之助) 귀하[71]

이상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를 살펴보았다. 9종 16개의 최정숙 재판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정숙은 18세이던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의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최은희, 고수선, 강평국 등과 함께 최정숙은 선동하는 지위에 있던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립만세를 부르는 행동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노라고 신문에 대답하였다. 충무로에 있던 기숙사에서 나와 종로 대한문, 창덕궁, 서대문, 서소문, 소공동 일대를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다니다 현재의 서울 중부경찰서에 검거되었다. 죄명은 보안법 위반, 형량은 징역 6월에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모두 계산하고 3년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재판 관련 문서에 드러나는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71) 「상소포기신청서」(서대문형무소, 1919. 11. 7.),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8(1994) 수록.

V. 맺음말

본고는 최정숙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9종 16개의 문서를 살핀 글이다. 신문 과정의 문서를 통해서는 3·1운동 참여 당시 최정숙의 행적을 정리해낼 수 있었다. 재판과정 문서를 통해서는 공판과 적용 법 조문 등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파악된 최정숙은 18세의 학생으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충무로에 있던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 기숙사에서 종로, 무교동을 거쳐 대한문까지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와 창덕궁 앞과 경복궁 앞, 광화문에서 서대문, 서소문, 소공동을 지나 충무로 쪽으로 갔다. 서울 중앙우체국과 충무로 일대에서 만세를 부르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체포되었다.

3월 1일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10월 29일 공판이 있었고 11월 6일 판결을 받았다. 죄명은 보안법 위반, 형량은 징역 6월에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모두 계산하고 3년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참여자들이 보석 등을 받아 풀려난 후 다시 공판에 참석하는 기록이 있는 반면 최정숙은 3월 1일에 체포된 후 풀려났던 기록은 없다. 이로 미루어보면 8개월여를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문서상으로는 90일 구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16개의 재판관련 문서로도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차후 최정숙 관련 3·1운동 참여 기록이 나오면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다.

최정숙은 3·1운동 참여 이후 제주도에 내려와 교육과 여성 계몽활동에 주력한다. 이는 3·1운동 이후 실력배양이라는 화두에 힘을 모았던 청년활동의 일환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의 3·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은 차후 독립운동가 최정숙의 생애 전반을 조명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수형인명부」(경성지방법원 검사국, 1919. 11. 6.), 국가기록원 소장
「예심종결결정서」(경성지방법원, 1919. 8. 30.), 국가기록원 소장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11. 6.), 국가기록원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3, 14, 15, 17, 18(1994)

2. 단행본

김찬흡, 『20세기 제주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0)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경인문화사, 2013)

3. 논문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 설립운동」『탐라문화』24,(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4)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정토학연구』제10집(한국정토학회, 2007)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2006)
한금순,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제12집(대각사상연구원, 2009)

4. 기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동아일보』(1921. 3. 25.)
『동아일보』(1921. 8. 29.)
『동아일보』(1927. 5. 18.)

Abstract

Analysis of the court documents on Choi Jeongsuk's the 1919[Samil]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Han, Geun-soon

Choi Jeongsuk was a person of Jeju island who participated in Samil Independence Movement on March 1st. 1919 at Tapgol Park in Seoul. At that time, she took part in the movement when she was a student. There were nine types of 16 legal documents on Samil Movement which were associated with Choi Jeongsuk. These include an interrogatory, the movements and prealent inquiry of demonstrators in Gyeongseong Girls' High School, written opinion, the decision in writing of terminating a preliminary examination, opinion for demand, written apology for trial, written judgment, the list of convicted person, application for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so on. Through these documents on Choi Jeongsuk, we can examine closely how students recognized that era and how Japanese Imperialism processed the movement in court.

Examining these papers, Choi Jeongsuk was a 18-year-old student, who took part in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with other students at a dormitory in Chungmuro on March 1st, 1919 at Tapgol Park.

They staged a Manse demonstration, marching from dormitory through Jongno, Mugyo-dong to Daehanmum gate, returning to Jongno, going in front of Changdeok Palace, Kyungbok Palace, and Gwanghwamun through Gate Seodaemun, Seosomun, Sogong-dong to Chungmuro.

When they staged a Manse demonstration at Seoul Central Post Office

around Chungmuro, they were caught in the act at Seoul Jungbu Police Station

After She was arrested on the spot of March 1st, the first hearing was on October 29th, and she was convicted on November 6th. She was charged with a safety-code violation and sentenced to six months in jail and 90 days of confinement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hree years.

She put all of her energy into the enlightenment of women's educational and social activities because she perceived that cultivating their abilities through education was the way to reclaim the sovereignty of a nation during the whole Japanese colonial era.

The analysis of this thesis is thought to be utilized as her activities' philosophical backgrounds after March 1st Movement and basic research data that can test the area of her activities.

Keywords : Samil Independece Movement(March 1st Movement), Choi Jeongsuk, Go Suseon, Gang Pyeongguk, Gyeongseong Girls' High School, Yeo Suwon, Sinsung school

교신 : 한금순 632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77-8
(E-Mail: sanhana@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5. 7. 15
수정완료일 : 2015. 8. 10
게재확정일 : 2015. 8. 13